

교회음악연구소 운영 규정

제1장 총칙

제 1조(명칭과 위치) 이 연구소는 대신대학교 교회음악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 칭하고 대신대학교 내에 둔다.

제 2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교회음악전반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고, 그 결과의 발표와 보급에 관한 일에 기여함으로써 바람직한 교회음악 정착화를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(사업) 이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교회음악에 관한 제반 문제의 조사 연구
2. 각종 교회음악 관련 세미나 및 행사
3.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
4. 연구논문집, 간행물 등의 발간
5.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

제2장 조직

제 4조(기구) 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구를 둔다.

1. 연구부 : 교회음악에 관한 연구자료조사 분석 및 연구논문집, 간행물 등의 발간
2. 기획부 : 연구소의 각종 기획 및 홍보

제 5조(구성원) 이 연구소의 각 기구에는 다음 각 호의 구성원을 둔다.

1. 소장 1명
2. 부장 2명
 - 가. 연구부장 1명
 - 나. 기획부장 1명
3. 연구원 약간 명
4. 조교 약간 명
5. 사무직원 약간 명

제 6조(임명) 이 연구소의 구성원에 대한 임명은 다음과 같다.

1. 소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2. 부장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3. 연구원 및 조교는 소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4. 사무직원은 총장이 임명한다.

제 7조(임기)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연구원, 조교 및 사무직원은 관련 인사규정에 의한다.

제3장 활동

제 8조(임무) 이 연구소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,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.
2. 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분야의 업무를 관장한다.
3. 연구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연구와 상담업무를 담당한다.
4. 조교는 소장의 명을 받아 연구업무를 담당한다.

제 9조(운영위원회) 이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같이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

1. 위원회는 소장과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.
2. 위원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3. 본 연구소의 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제 10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소의 기본운영 계획
2.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
3. 연구소의 규정·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·폐
4. 중요 간행물 발간
5. 기타 필요한 사항

제11조(회의)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재정) 연구소의 재정은 본교보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하며 회계년도는 본교 회계년도에 따른다.

제13조(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1. 이 규정은 1994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이 변경 규정은 199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이 변경 규정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이 변경 규정은 200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